

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F-39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5. 22.

제 출 자 : 송바우나의원 외 8명

1. 개정이유

-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「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」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(안 제20조)

- 안산시의회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
-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.

3. 개정조례안 : 불임 1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불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6. 현행조례 : 불임 3

7.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 4

8.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
- 「안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미실시

〈붙임 1〉

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본문 중 “외부강의등을” 을 “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”로, “미리”를 “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외부강의등을” 을 “의원의 외부강의등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의회사무국
입안자	시의원	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

〈붙임 2〉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생 략)	제2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원은 <u>외부강의등을</u>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	② ----- <u>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</u> ----- ----- <u>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</u> ----- ----- -----.
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<u>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</u>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사항을</u> <u>안 날부터</u> ----- -----.
④ <u>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u>	<삭 제>
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<u>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원의 외부강의등을</u> -----.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